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00호 2016. 8. 22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-120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-121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-----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-111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
차량 공고 ----- 3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-120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8. 16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 : 심곡천(지방하천)

가. 허가 번호 : 제2016 - 04호

나. 허가년월일 : 2016. 08. 16.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(대표 : 차재국)

나. 주 소 : 인천 서구 가좌동 ***
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로 및
자동유량조절장치 설치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인천 서구 연희동 827

나. 면 적 : 12.3m²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16. 8. 16. ~ 2020. 12. 31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-121호

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6. 8. 24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재난위험시설 해제

대 상 시 설			해제 사유	지정 등급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명	소재지	소유자				
석남동 동진아파트 옹벽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	민간	보강공사완료 (D→B)	B급	반기별 1회 정기안전점검 실시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-1119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, 동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
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
2016. 8. 18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□ 공고기간 : 2016. 8. 22. ~ 2016. 9. 6.(15일간)

□ 공고내용

1. 행정처분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운행정지명령대상	자동차등록번호	인천33도4908 외 5대 (“붙임” 참조)		
	차명			
3. 운행정지사유	소유자의 요청			
4. 법적근거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명	교통민원과
	주소	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) (☎ 032-560-4877, FAX 032-560-2794)		

※ 유의사항

-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, 즉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불법 운행된 사유	등록일
1	인천33도4908	스펙트라	도난·분실자동차	2016.08.04
2	18노6322	볼보	개인간의 채무관계	2016.08.10
3	10너8834	렉스턴	개인간의 채무관계	2016.08.08
4	05서3797	그랜저(GRANDEUR)	개인간의 채무관계	2016.08.10
5	95보2474	붕고프런티어	기타	2016.08.12
6	22라2618	프라이드	개인간의 채무관계	2016.08.17